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의 적용사례 분석*

The Analyzing on Application Cases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홍성규**
Sung-Kyu Hong

〈목 차〉

- I. 서 론
- II. PICC의 특성과 역할
- III. PICC의 적용사례 분석
- IV. PICC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V. 결 론

주제어: PICC, CISG, 국제상사계약, 준거법, 상인법(*lex mercatoria*), 법규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 연구
임”(KRF-2008-327-B00342)

** 충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011-468-8135, hsk576@cjnu.ac.kr

I. 서론

오늘날 물품이나 서비스의 국제거래는 거래 자체가 국가(nation-state)를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supranational or transnational)인 것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인 거래법도 국가법인 국내법보다도 범세계적인 상거래법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범세계적인 상거래법은 현 시점에서 아직 유동적이고 엄밀한 정의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적용될 실체법이 현대의 일체화된 글로벌경제에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국제상거래에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실체법을 말한다. 그 구성요소로서는 협약, 모범법(model law), 자율적 국제규칙 및 상인법(*lex mercatoria*)¹⁾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자율적 국제규칙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이하 ‘Incoterms’)과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은 국제상거래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다만, 그 대상이 극히 한정적이어서 자율적 국제규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원칙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²⁾ 일반적인 법원칙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과 국제사법위원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라 한다)에서 제정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이하 ‘PICC’라 한다)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 통일사법으로써 협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CISG는 경성법적인 성격과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적지 않은 법적흡결을 갖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국제적 수준의 통일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배경을 갖고 제정된 PICC는 국제상사분쟁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역할일 것이다. 국제상거래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의 확률로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이에 대하여 PICC는 점차 당사자간에 발생한 논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분쟁의 개별진술이나 항변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일찍이 1996년에 UNIDROIT에 의해 실시된 조사의 경우 질문에 응답한 25%이상이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제소하기전 소장에서 1번 이상 PICC를 언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점은 법관이나 중재인이 자신들의 판결(판정)에 PICC를 인용하고 있는 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규, “*Lex Mercatoria*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의 역할”, 『무역학회지』, 제2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4, pp.191-195참조.

2) Incoterms는 정형무역거래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물품에 관한 위험이전시기를 정하고 있을 뿐이며, UCP는 신용장거래에 관련한 규칙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매매계약에서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PICC가 CISG의 차선택으로 되어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에 의해서 또는 계약이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이나 상인법(*lex mercatoria*)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우에 그 권위있는 표현으로서 적용된다. 즉, PICC는 범세계적인 상거래법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에 적용된다.³⁾ Bonell교수에 의하면, 실무적으로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매매계약의 계약법으로서 PICC가 적용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⁴⁾

2011년 1월의 UNILEX Database에 따르면, 246건의 PICC 적용사례중 156건(63.4%)을 중재판정부가 원용하였고, 법원은 90건(36.6%)만을 원용하고 있다.⁵⁾

이러한 점은 PICC의 비구속력을 갖는 성질로 인하여 중재에만 적용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왔던 점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세계 각지에서 내려지는 모든 중재판정건수중 PICC를 원용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극소수에 해당⁶⁾하고, 어떤 해에는 감소하기조차 하였기 때문에 그리 인상적이지 않다는 점도 부정하는 것이다. 여전히 이러한 논쟁은 반드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 PICC가 분쟁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원용된 사례가 적은 이유는 PICC가 거래당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사건들도 대부분 특정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80% 이상이었기 때문이다.⁷⁾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중재사례에서 당사자들은 분쟁의 실체에 적용가능한 법으로 특정국내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재인들은 PICC의 원용을 주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통일법규범(*uniform law instruments*)과 비교하여 PICC의 사용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를 CISG의 적용과 비교하였을 경우, CISG가 발효된 1988년 이후 현재(2011.1)까지

-
- 3) 新堀 聰, “グローバル商取引法 各論, その二: ユニドロワ國際商事契約原則(1)”, 「JCAジャーナル」, 第50卷 2 號, 日本商事仲裁協會, 2003.2., p.20.
 - 4) Michael J. Bonell,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Sales Law” in Ian Fletcher et al., *Foundation and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London: Sweet & Maxwell, 2001, pp.302-304.; Michael Joachim Bonell, *The UNIDROIT Principles in Practice: Caselaw and Bibliography on the Principles of Commercial Contracts*,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2, pp.349-702. 및 <http://www.unilex.info/cases.cfm?pid=2&do=arbitral>에서는 PICC를 원용한 중재판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클릭하면 내용(FullText 또는 Abstract)을 볼 수 있다.
 - 5) 본인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2006년 5월 UNILEX Database 나타난 122건의 적용사례중 98건(80.3%)이 중재판정부가 원용하였고, 법원은 24건(19.7%)만을 원용하고 있었으나(홍성규,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 원칙(2004)의 적용과 전망”,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p.164. 참조), 최근 국제상사분쟁해결에 법원의 원용사례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6) 1996~2000년 동안 내려진 ICC중재판정건수 중 오직 3%만이 PICC를 언급하고 있다.; P. MAYER, “The Rol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CC Arbitration Practice”, in ICC/UNIDROIT (eds),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Reflections on their Us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pecial Supplement-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2002, p.106.
 - 7) Michael Joachim Bonell, “UNIDROIT Principles 2004-The New Edi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FORM LAW REVIEW*, 2004, pp.5-40.(<http://www.unidroit.org>에서 출력); 홍성규, 전제논문, p.164.

873건의 분쟁해결시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784건(89.8%)이 각국의 법원판결에 적용되었고, 89건(10.2%)만이 중재판정부에서 중재판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상대적으로 PICC가 향후 중재판정부에서 원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PICC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⁹⁾는 그동안 무역학과 법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동학문의 중심연구영역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부분적이거나 국제거래법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PICC에 관한 국내서적으로는 오원석·최준선·허해관(2006)의 역서「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법문사)가 유일하다. 그 밖에 연구논문으로는 오원석(1997, 1998, 1999, 2000), 최준선(2002), 안강현(2002), 최홍섭(1999, 2002), 오세창(2002), 배준일(2001), 박상기(1998, 2000), 홍성규(2003, 2004, 2005, 2006) 등의 연구가 있으며, 박사학위논문으로는 송현주(2002), 안건형(2010)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UNIDROIT에서 오랫동안 PICC의 제정(1994) 및 확대·개정(2004)을 위해 작업반 실무위원(의장)으로 활동해 왔던 Michael Joachim, Bonell교수의 업적이 탁월하며, 동양에서는 UNIDROIT원칙을 번역한 Zang Yuqing 편역(2005) 및 상무부조약법률사 편역(2004) 등 중국어판 2종이 있고, 일본어판으로는 曾野和明 外 3人 共譯, 「UNIDROIT 國際商事契約原則」(2004)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¹⁰⁾ 선행연구에서 다소 취급되지 않았던 내용과 실제 법원 및 중재판정부에서 PICC를 적용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나 실무자들에게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범세계적인 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관련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는 발전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례연구의 축적이 국제상거래법의 통일과 관련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의 의의도 여기에 있다.

II. PICC의 특성과 역할

1. PICC의 의의

국제적인 계약법의 조화는 특히 PICC의 완성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8) <http://www.unilex.info>에서 기초자료 분석함.; CISG를 원용한 분쟁해결비율은 2006년 5월 조사의 경우에는 총 691건중 619건(89.6%)이 법원판결에 적용되었고, 72건(10.4%)이 중재판정부에서 원용되었는바 큰 차이가 없다.

9)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의 출처는 지면상 본 논문에 직접 인용된 것을 제외하고 생략한다.

10) 이러한 측면에서 홍성규, 전계논문, pp.151-182.은 본 논문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CISG는 구속력있는 규범을 입법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CISG는 입법절차의 곤란성 내지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또한 CISG는 대륙법 중심의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기술을 중시한 나머지 무역거래의 실재에는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유럽 이외의 국가의 경제체제나 법체계를 배려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UNIDROIT는 국가법적인 입법절차에 의한 구속력있는 법규범을 만드는 것 대신 현존하는 국제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규범들을 재기술(*restate*)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실적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설득력을 갖는 규범을 재기술(*restate*), 즉 명문의 형태로 기술함으로써 사실상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PICC의 채용은 기존의 국가법질서에 따른 계약의 규율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이 준거하는 규범을 자국 법도 아니고 상대국의 법도 아닌 현실의 거래에 적용가능한 범세계적인 규범으로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이나 상인법(*lex mercatoria*)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거래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자율성이 높은 국제계약법과 같은 제3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¹¹⁾ 따라서 PICC는 CISG의 그늘에 있었지만 상인법(*lex mercatoria*)의 현대적 부활을 주장한 선구자들(*opinion leaders*)이 추진한 또 하나의 범통일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CISG가 국가법시스템의 최종도달점이었다고 한다면 PICC는 초국가법시스템을 향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조문구성도 대륙법적이고 통일상법전(UCC)이나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와 비교하면 조문수는 적지만 PICC자체의 독특한 특징¹²⁾도 갖고 있다. 초안작업에서는 최신의 각국 입법이나 국제규칙 등을 많이 참고하였다.¹³⁾ 상당히 많은 획기적인 내용들이 PICC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 당사자들은 자국의 국내법 대신 초국가적인 PICC의 적용을 통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거래기준을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 PICC 전문에서는 「법의 일반원칙」이나 「*lex mercatoria*」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으나, 전자는 후자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CISG에서도 이 협약상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제7조 2항)하고 있으나 일반원칙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다만, CISG의 모든 조항과 고전적인 계약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부터 급반언(CISG 제80조), 선의·공정거래, 합리성, 통지의무 및 손해경감의무 등을 들 수 있다(오원석, 「국제상사계약에서 UNIDROIT 원칙의 실무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4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9, p.170).

12) PICC는 총 10장 185개 조항, 즉 본문(*black letter rule*), 유권해석(*comment*), 예시(*illustrat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유권해석은 본문과 일체되어 PICC를 구성하고 있는바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나 통일상법전(UCC)에서 사용하여 성공한 예를 따른 것이다. 다만, 리스테이트먼트와의 차이점은 각 규정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이는 PICC의 국제성을 고려하여 국내법적 성격을 갖는 인용문헌을 생략하였기 때문이다.

13) 네덜란드민법전, 퀘벡민법전, 멕시코상사법전, 독일의 개정채무법, CISG, INCOTERMS, UCP, UNECE의 플랜트 및 기계공급에 관한 일반 조항 등을 참고하였다(Michael Joachim Bonell, 「The UNIDROIT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Why? What?」, 69 *Tulane Law Review*, 1995, pp.1121-1130).

2. PICC의 주요특성

PICC는 CISG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PICC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CISG와 PICC의 관계는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인 것이 아니고 보완적 관계에 있다.¹⁴⁾ 우선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매매계약의 경우에는 PICC는 당사자에 의해서 법의 일반원칙 또는 상인법(*lex mercatoria*)으로서 선택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선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매매계약에서도 PICC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의 유효성문제, 보통거래약관문제, 공적허가의 취득문제, 대금지급의 방법과 수단 및 통화문제, 이행곤란(*hardship*)문제, 범칙금이나 위자료문제 등은 CISG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규정들이다. 한편, 총칙규정, 계약성립,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 상당부분은 그 규정범위가 상호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CISG가 이미 매매에 적용될 일반적 규정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PICC를 제정할 당시 입법자들이 CISG를 특히 많이 참조하여 법적흡결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측면에서 CISG와 PICC의 적용범위가 같을지라도 내용이 다른 경우 PICC가 훨씬 정교하고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에 비추어 양당사자가 계약상 PICC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도, 동시에 CISG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일반원칙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한 PICC는 CISG를 해석·보충하는 수단으로 적용가능하다.¹⁶⁾ 이리하여 Bonell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CISG와 PICC는 각각 그 존재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¹⁷⁾ 구체적으로 PICC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¹⁸⁾

첫째, PICC의 가장 큰 특징은 CISG와 같은 협약(*convention*)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에서 비준절차를 통하여 국내법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상인법(*lex mercatoria*)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PICC의 전문(Preamble)에서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선택이 있는 경우, 계약이「법의 일반원칙」이나「상인법(*lex mercatoria*)」, 또는 이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PICC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PICC는 분쟁의 실제

14) 홍성규, “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의 적용가능성”, 「국제무역연구」, 제10권 제2호, 국제무역학회, 2004, pp.17-18.

15) 최홍섭,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의 적용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8집, 국제거래법학회, 1999, p.94.

16) 이러한 의미에서 PICC를「무차별적으로」CISG의 해석·보충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Bonell교수의 충고는 대단히 중요하다.

17) Michael J. Bonell,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Sales Law” in Ian Fletcher et al., *Foundation and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London: Sweet & Maxwell, 2001, p.309.

18) 홍성규,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2004)의 적용과 전망”, 전제논문, pp.160-163.

를 규율하는 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계약자체에 또는 중재절차의 개시시에 PICC의 적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받는다.

둘째, PICC는 국가적인 입법방식에 따라 구속력있는 규범을 제정하는 대신 현존하는 국제거래법을 재기술(*restate*)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PICC 그 자체를 상인법(*lex mercatoria*)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국제상거래에서 생성·발전되어온 규칙을 재기술(*restate*)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PICC는 단순한 계약서나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일체의 법적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나 법관이나 중재인이 분쟁의 해결에 원용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즉 설득력(*persuasive value*)을 갖는 경우에만 실무상 적용 가능한 것이다.¹⁹⁾

셋째, CISG가 물품매매계약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PICC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국제상사계약 전반에 적용가능하다는 점이다. PICC의 적용범위를「국제」계약에 한정시킨 이유는 국제거래관계에서만 법저촉문제가 발생하고 타국에서는 속지주의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내법의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공통적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물품에 관한 통일법(*the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ULIS'라 한다)이나 CISG에도, 예를 들면 INCOTERMS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매매의 국제적 성격²⁰⁾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부터 PICC의 성안자들은 국제매매에 관하여 CISG와는 달리 각국의 계약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국제매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만민법형 통일법을 작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PICC는 소비자거래(*consumer transaction*)²¹⁾를 제외한 모든 상사계약, 즉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건설·투자·서비스·금전대차계약 등 모든 계약에 원용될 수 있다.

넷째, PICC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고방식은 유연성(*flexibility*)과 공평성(*fairness*) 다. 이를 위해 계약자유 원칙(제1.1조)을 채택하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국경없는 거래(*borderless transactions*)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습에 대하여 개방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또한 PICC는 계약충실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을 고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등가관계의 파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곤란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무역에서의 신의성실과 공정거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international trade*)의 원칙(제1.7조 1항)을 당사자간의 협상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PICC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CISG는 이러한 의무를 협약의 본문과 협약의 해석을 위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1항). 결국, PICC는 대부분의 조항²²⁾을 통하여 합리성과 공평성을 추구하여 항

19) M.J. Bonell,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3.

20) 본 저자의 생각으로는 CISG 제19조(청약을 변경하는 승낙), 제32조(운송의 수배에 대한 매도인의 통지), 제34조(매도인의 서류교부) 등이 아닐까 한다.

21) 소비자거래는 각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있어 계약자유 원칙이 배제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PICC, 전문, comment 2).

시 변화하는 국제상거래의 실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PICC는 적용가능한 국내법의 해석·보충수단으로 활용²³⁾될 수 있으며, 국내 또는 국제입법자들에게 표본(model)으로 제공²⁴⁾될 수 있다. 또한 PICC는 각국의 저명한 비교법학자들이 모여 세계 공통의 최대공약수적인 내용을 찾아 국제상거래에 가장 적합한 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및 국제입법에 유용한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²⁵⁾ 또한 국제적 측면에서 종종 동일한 개념과 내용이 국제협약마다 서로 달리 표현되어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PICC는 이러한 법률용어의 통일에도 기여하게 된다. 결국 PICC는 국제상사계약의 중요한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상사분쟁의 예방적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²⁶⁾

3.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역할 등

PICC에서는 ‘중재(arbitration)’ 관련 용어를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조항²⁷⁾은 그리 많지 않고 오로지 ‘법원(court)’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²⁸⁾ PICC의 적용은 법원의 소송보다도 국제상사중재에서 더욱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송의 경우 법원은 우선 법정지의 저촉규범 또는 국제사법(강행규범)을 적용하고, 그 저촉규범이 정한 연결원칙에 따라 실체에 적용되는 준거법인 실질법을 결정하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경우 대부분 특정 국내법이 일반적으로 지정된다. 반면에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해당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상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그리고 임의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지국 중재법상의 준거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경우 실체의 준거법 지정 시 각국의 입법례, 중재규칙, 국제협약 등에 따라 특정 국내법 이외에 PICC를 포함한 비국내적 법규가 적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²⁹⁾

22)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를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4조 2항 (b),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20조, 제3.5조, 제3.8조, 제3.10조, 제4.1조 2항, 제4.2조 2항,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6.1.3조, 제6.1.5조, 제6.1.16조 2항, 제6.1.17조 1항, 제6.2.3조 3항 및 4항, 제7.1.2조, 제7.1.6조, 제7.1.7조, 제7.2.2조 (b) 및 (c), 제7.4.8조 및 제7.4.13조 등이다(PICC 제1.7조, comment 1).

23) PICC 1994년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법리상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2004년 개정판 전문 제6항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4) 1995년 러시아민법, 리투아니아민법, 스코틀랜드사법, 에스토니아민법, 1999년 중국계약법 등은 PICC를 일부 또는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5) 물론 이 경우에도 모범법(model law)의 수용국이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형·수정하여 국가법을 제정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

26) 최홍섭, 전제논문, pp.103-104.

27) PICC, 전문, comment 4(a), 제10.6조 등. 그리고 제10.7조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8) PICC, 제1.11조, comment 1.

PICC는 국내법으로 직접 적용되거나 그 후 입법행위에 의해 국내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CISG와는 달리 자동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PICC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가 국제계약의 준거법의 일부로서 명시적으로 선택하든지, 계약의 내용에 국제계약의 일반원칙 또는 단순히 상인법(*lex mercatoria*)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을 명기하는 등 PICC를 묵시적으로 선택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통일된 국제사법의 부존재와 국제상거래의 다양화·대형화·장기화에 따른 분쟁의 증가에 대처하여 가장 실효성있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책으로서 PICC의 활용이 기대된다. 특히 각국의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당사자들이 자신의 계약에 PICC의 적용을 명시하거나, 중재인이 국제상사계약에 적용할 규정을 보충(fill a gap)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할 때 중재판정에서 많이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³⁰⁾

Ⅲ. PICC의 적용사례 분석

1. PICC의 적용사례 개요

PICC의 전문 제1문에 따르면, 국제상사계약에 적용될 일반적 규칙들(*general rules*)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PICC가 적용 내지는 사용되는 경우를 6항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확대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³¹⁾ 본 논문에서는 제1문과 제7문을 제외하고 5가지의 경우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PICC의 모든 규정들이 국제분쟁해결에 있어서 동등하게 중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ICC중 가장 많이 인용된 조항은 국제무역에서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7조, 계약의 해석에 관련된 제4장,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제7장 제3절과 제4절 등이다. 국제상사중재에서 PICC가 인용된 경우는 다음의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기(1996-1999) 및 2000년대 전반기(2000-2004)에는 매년 대폭 증가하였으나 후반기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사건의 처리가 진행중이거나 중재의 특성상 판정사례의 미공개로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폭 증가할 것이다.

29) 안건형,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3.

30) Joern Rimke, “Force majeure and hardship: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with specific regard to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http://www.cisg.law.pace.edu/cisg/biblio/rimke.html>

31) PICC, 전문, comment 8.

〈표 III-1〉 PICC의 적용사례 분석

연도별 건수		분쟁해결기관별 건수			
연도	건수	중재판정부 (Arbitral tribunal)		법원(Court)	
		연도	건수	국가	건수
0000	4	0000	4	아르헨티나	1
1990	1	1990	1	오스트레일리아	12
1994	3	1994	3	벨로루시	3
1995	6	1995	5	벨기에	1
1996	16	1996	14	중국	7
1997	14	1997	10	캐나다	1
1998	14	1998	10	EC대법원	1
1999	12	1999	11	CIS	1
2000	13	2000	11	프랑스	3
2001	18	2001	14	인도	2
2002	23	2002	16	ICSID	4
2003	21	2003	16	이탈리아	7
2004	22	2004	17	리투아니아	4
2005	14	2005	5	네덜란드	9
2006	13	2006	3	뉴질랜드	2
2007	18	2007	6	폴란드	1
2008	15	2008	7	스페인	14
2009	14	2009	2	스위스	4
2010	5	2010	1	영국	7
합계	246		156	UN보상위원회	1
				미국	4
				베네수엘라	1
				90	
				246	

자료: <http://www.unilex.info>에서 Data를 인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2011.01.19.방문).

** PICC의 발효(1994) 이전의 사례는 UNIDROIT에서 발표한 초안(draft)을 원용한 사례로 판단된다.

〈표 III-2〉 PICC의 전문(Preamble)에 관련된 사례분석

주요내용	건수
PICC의 실질적 적용범위	
국제상사계약	1
국제계약 v. 국내계약	2
PICC의 적용가능성	
계약의 준거법	2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원칙	4
제소전 분쟁	3
중재신청전 분쟁	16
계약상 'lex mercatoria'의 표현으로서의 원칙	7
계약상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의 표현으로서의 원칙	15
국제스포츠법(lex sportiva)으로서의 원칙	1
일체의 법선택약관(choice-of-law clause) 부재시 적용된 원칙	4
중재인이 적용하기 위해 결정하는 법규범(rules of law)으로서의 원칙	19
중재인에 의해 모든 사건에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관련 무역관습(relevant trade usages)'으로서의 원칙	15
동 원칙과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arbitration ex aequo et bono)	3
기타 적용가능한 국내법의 해석·보충수단으로서의 원칙	129
국제적인 통일법규의 해석 및 보충	2
동 원칙과 CISG	41
동 원칙과 기타 국제규범들(international instruments)	8
계약서 작성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원칙	1
모범계약약관(model contract clauses)으로서의 원칙	1
국제계약의 해석수단	1
동 원칙과 유사 규범들(예를 들면, 유럽계약법 원칙)	25
동 원칙의 개정판과 관련	1
합계	301

자료 : <http://www.unilex.info>에서 Data를 인용하여 저자가 구성함.(2011.01.19.방문). 합계는 원문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 바, 수정하였음. 또한 실제 건수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복적용된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2. 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한 경우

PICC는 국내법계(national legal system)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거나 국제상거래의 특별한 요구에 가장 적합한 계약법의 원칙 및 규범체계(a system of principles and rules of contract law)로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계약을 지배하는 법규범으로 명시적으로 이를 선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³²⁾ 당사자가 PICC를 준거법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각종 ICC모델계약법³³⁾과 같이 지정된 준거법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 또는 보완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상공회의소 중재³⁴⁾에 따르면, 러시아무역기구와 홍콩회사간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분쟁발생후 중재부탁시에 당사자가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는 PICC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을 합의하고 중재에 부탁하였다.

또한 로잔느상공회의소의 중재사건³⁵⁾에 따르면, 벨기에회사와 스페인회사간에 신제품의 개발에 관한 계약에는 명확한 준거법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국제상사계약에 적용가능한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는 PICC의 적용에 합의하였고,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실체문제에 대하여 PICC 전문 제2항을 당사자가 선정한 준거법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재부탁이 있거나 당사자가 PICC를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이다.³⁶⁾

3. 계약을 법의 일반원칙 및 상인법(lex mercatoria) 등에 준거한다고 합의한 경우

이 경우는 당사자가 법의 일반원칙 또는 상인법(*lex mercatoria*) 등에 따른다고 합의하였지만 PICC를 적용한다는 점은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이다. ICC의 중재국제판정³⁷⁾에 따르면, 루마니아 매도인과 영국의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은

32) PICC, 전문, comment 4(a).

33) The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ICC Publication 556), A. Special Condition A-14, B. General Condition 1.2 A.B.; The ICC Model Distribution Contract Sole Import-Distributor 2nd ed. (ICC Publication No. 646E) Article 24.1; 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ternational Plant (ICC Publication No. 653E) 36. Applicable Law.

34) UNILEX 20.01.1997 Arbitral Award No.116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of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35) UNILEX 25.01.2002 Arbitral Award by Arbitration Court of the Lausan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중재판정 없음).

36) ICC중재규칙 제17조 1항은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법규(the rules of law)를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관련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규(the rules of law)를 적용할 수 있다.” 동조 2항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중재판정부는 계약조항 및 관련 거래관행(the relevant trade usages)를 고려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ternational law’라고 되어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이것을 국가법에 의하지 않는다고 당사자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은 국제계약에 적용할 상인법(*lex mercatoria*)과 법의 일반원칙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하여 PICC를 적용하였다.

또한 독일회사와 러시아회사간의 제품판매에 관한 상업서비스계약³⁸⁾에 있어서 분쟁처리에 관한 결정은 “상인법(*lex mercatoria*)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모든 사항은 독일법과 러시아법의 양국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준거법을 양국법으로 지정한 것은 상인법(*lex mercatoria*)의 일반원칙 적용에 무게를 둔 것이며, 양국의 국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간주하여 PICC를 적용하였다.

4. 준거법을 계약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PICC를 적용한 사례는 상당히 많으며,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한 경우,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교섭중의 분쟁에 적용한 경우, 불명확한 계약조건의 해석을 요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중재규칙에 따른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PICC를 준거법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에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PICC를 준거법으로 원용할 수 있다.

ICC국제중재사건³⁹⁾에 따르면, 일본회사를 라이선스제공자, 프랑스회사를 라이선스수탁자로 하면서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라이선스계약상의 분쟁에 있어서, 일본회사는 일본법의 적용을 주장하였고, 프랑스회사는 프랑스법의 적용을 주장하였지만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국가법을 인정하지 않고 ICC중재규칙 제17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법규범(rules of law)에 의하기로 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적용가능한 실체법은 국제거래의 법규범(rules of law)과 관습(usages)이며, 구체적으로는 PICC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중국회사와 유럽회사간의 준거법의 규정이 없는 기술교환과 협력계약에 따른 분쟁⁴⁰⁾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규칙 제24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법규범(rules of law)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국제적으로 성문화되어 있거나 국제거래

37) UNILEX 06.01.2003 ICC Arbitral Award No.12111.

38) UNILEX 05.11.2002. Arbitral Award No.11/2002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of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39) UNILEX 00.01.1999 ICC Arbitral Award No.9875.

40) UNILEX 00.00.2001.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Arbitral Award No.117/1999.

를 행하고 있는 국가들간에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글로벌 법규로서 CISG와 PICC를 거론하고, 본 건은 라이선스계약에 해당하므로 PICC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교섭중의 분쟁에 적용한 경우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교섭중의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것은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계약교섭이나 계약의 준비단계 또는 예비적 합의단계에서의 분쟁처리라고 할 수 있다.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분쟁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섭중의 교섭결렬, 일반거래조건협정서, 가계약서(letter of intents) 등 정식계약서가 아닌 일종의 합의를 둘러싼 분쟁이다. 계약교섭 또는 준비단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개시나 설명을 하지 않았든지 정보의 개시나 설명에 잘못이 있었던 경우, 만일 계약체결후 상대방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계약교섭 또는 계약준비단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력의무, 고지의무, 설명의무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호주연방법원은 입찰전의 계약에 대하여 PICC 제1.7조에 따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과 공정거래의 원칙을 들어 판결⁴¹⁾하였으며, 네덜란드 최고법원도 가계약서(letter of intents)의 해석에 대하여 PICC 제2.1.13조(특정한 사항에 대한 또는 특정한 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에 따라 판결⁴²⁾하였다. 또한 영국항소법원도 영국회사와 영국회사간의 인력과 기기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우선공급자의 지위'문제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쟁점은 외부증거의 계약체결전의 계약교섭을 증거로서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제1심은 영국은 전통적으로 계약전의 교섭은 계약해석의 증거로서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계약체결전의 구두증거를 허용하면서 PICC 제4.3조(모든 사정의 고려), CISG 제8조 등을 원용하였다.⁴³⁾

(3) 불명확한 계약조건의 해석을 요하는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불명확한 계약조건의 해석을 위해 PICC를 원용할 수 있다. 유럽제조업자와 라틴아메리카 판매업자간의 판매점계약에 있어서 불명확한 계약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는 국제계약의 일반원칙으로서 규칙(rules), 즉 상인법(*lex mercatoria*)에 따를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PICC의 적용을 판정⁴⁴⁾하였다.

또한 미국회사와 프랑스회사간의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모순성이 있

41) UNILEX 30.06.1997 Federal Court of Australia No.558.

42) UNILEX 02.02.2001.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No.R99/120HR.

43) UNILEX 17.02.2006.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No.2006 EWCACiv 69 Proforce Recruit Limited v. The Rugby Group Limited.

44) UNILEX 00.00.2001 ICC Arbitral Award No.10422.

는 규정에 의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프랑스법원은 PICC 제2.1.21조(표준약관상의 계약조건과 표준약관 외부의 계약조건간의 충돌), 제4.6조(작성자불리의 원칙) 등을 적용하도록 판결⁴⁵⁾하였다.

5. 국제통일규범을 해석·보충하는 경우

국제매매계약에 CISG가 적용되는 경우에 PICC는 CISG의 해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PICC에서는「국제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과 공정거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international trade)」를 미리 계고하고 있다(제1.7조 1항). 이와 같은 신의성실과 공정거래의 원칙은 PICC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므로 당사자들은 이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를 포함하여 계약의 전과정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

이에 반하여 CISG 제7조 1항은「이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국제적 성격과 그 적용에 통일을 촉진하고 국제거래에서 신의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2항에서「본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문제로서 본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본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은 PICC와 CISG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따라서 종래 CISG의 적절한 해석을 위한 원칙·기준은 법관이나 중재인에 의해서 그때마다 발견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PICC의 발표 후에는 과연 이 원칙을 CISG의 해석·보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사용가능한지가 논의되어 왔다.

이 점에 대하여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자는 PICC는 CISG보다도 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양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CISG를 해석하기 위해서 PICC를 원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⁶⁾ 또 다른 학자는 PICC는 국제상사계약의 일반원칙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CISG를 해석·보충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⁴⁷⁾ Bonell교수는 양자의 견해에 대하여 정답은 그 속에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PICC가 설사 기존의 것이었다 할지라도 CISG와 같은 국제적 문서의 해석·보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하등의 의심의 여지가

45) UNILEX 24.01.1996 Cour d'appel de Grenoble No.unknown.

46) Frederique Sabourin, "Quebec," in M.J. Bonell, ed.,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245.

47) Klaus Peter Berger, *The Creeping Codification of the Lex Mercatoria*,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p.181-183.

없으나 한편으로 PICC의 개별규정에 CISG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CISG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일반원칙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⁸⁾

ICC국제상사중재판정부는 오스트리아매도인과 스위스매수인간 화학비료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불이행이 있었는데, 손해배상에 대하여 CISG 제78조(연체된 금액의 이자), PICC 제7.4.9.조(금전부지급에 관한 이자)등을 적용하도록 판정⁴⁹⁾하였다. PICC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PICC가 CISG 제7조 2항의 협약에 따른 일반원칙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러시아상공회의소의 중재사건에서는, 불가리아회사와 러시아회사간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지불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penalty)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이것이 과대하다는 분쟁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CISG에 규정이 없으므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PICC를 적용하기로 하고, PICC 제7.4.13(2)(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규정에 의해 과대하다고 판정⁵⁰⁾하였다. 그리고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거래관행을 PICC가 수용하고 있으므로 PICC의 적용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스페인회사와 네덜란드회사간의 식품판매에 관한 판매점계약에 대하여, ICC국제상사중재판정부는 ICC규칙 제13조(3)에 의해 준거법으로서 CISG와 그 일반원칙을 적용하도록 판정⁵¹⁾하였다. 그리고 CISG의 일반원칙은 오늘날 PICC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PICC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베트남의 매도인과 네덜란드의 매수인간의 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Incoterms 1990과 UCP 500가 원용되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Incoterms와 UCP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면서도, Incoterms와 UCP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CISG와 PICC를 국제거래법의 거래관행(trade practices)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여 본 사건에 적용하였다.⁵²⁾ 또한 ICC는 국제상사중재에서 국제물품매매와 관련된 통일법(ULIS와 ULF)을 PICC를 갖고 해석⁵³⁾하였다.

6. 국내법을 해석·보충하는 경우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정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PICC가 그 국내법을 해석 또는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⁵⁴⁾ 앞의 <표 III-2> 사례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 Michael J. Bonell,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Sales Law" in Ian Fletcher et al., *Foundation and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London: Sweet & Maxwell, 2001, p.306.

49) UNILEX 00.00.1995 ICC Arbitral Award No.8128.

50) UNILEX 06.06.1997. Arbitral Award No.229/1996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of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51) UNILEX 00.12.1997. ICC arbitral Award No.8817, Collection of ICC Arbitration awards Vol.IV at 415.

52) UNILEX 00.11.1996 ICC Arbitral Award No.8502.

53) UNILEX 00.01.1999 ICC Arbitral Award No.8547.

PICC가 실제 적용된 경우는 국내법을 해석·보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법관이나 중재인이 특정 국내법에서 적법한 해법을 찾지 못하거나 해법의 대안에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PICC의 적용이 더 적합한 해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PICC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합의하는 경우 중재인은 특정한 국내법(a particular domestic law)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중재인이 우의적 중재인 또는 형평과 선에 따라(as amiable compositeurs or ex aequo et bono) 활동하도록 당사자로부터 수권받은 경우에는 보다 자명하지만, 이러한 수권이 없어도 중재인은 그들의 결정에 국내법 대신에 국제적인 법규범(rules of law)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⁵⁵⁾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중재인은 반드시 법규범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할 의무는 없다. 중재인은 탈지역적 또는 탈국가적 법규범(a-national or transnational rules of law)을 포함하여 다른 영감(sources of inspiration)에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중재인은 공공질서(public order)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관습(commercial usage), 신의성실 또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principles of good faith or natural justice)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⁵⁶⁾

ICC중재판정부는 네덜란드매도인과 터키매수인간의 기계매매설치계약에 대하여, 계약후 터키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이행곤란이 발생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준거법인 네덜란드법을 국제거래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법에 공통적인 내용들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PICC 제1.3조, 제6.2.1.조 등을 참조하였다.⁵⁷⁾ 또한 ICC중재판정부는 계약준거법이 리투아니아법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서 중재는 중재규칙 제17조 2항에 따른 거래관습(trade usages)으로서 국제상사거래 관습으로 최신 성문화(codification)된 PICC를 적용⁵⁸⁾하였다.

또한 이탈리아중재판정부는 미국회사와 이탈리아회사간 회사매수를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미국회사는 이른바 합병약관(merger clause)에 나와 있는대로 계약서기재가 전부이고, 계약체결전후의 당사자간 발언 등은 일체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준거법인 이탈리아법은 당사자간 공통의 의도를 계약체결전후의 행위나 합의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중재판정부는 PICC 제2.17조 본문과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이탈리아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도록 판정⁵⁹⁾하였다.

이상 PICC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PICC의 원용 또는

54) 홍성규,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2004)의 적용과 전망”, 전제논문, pp.170-171.

55)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준거법으로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다.

56) Michael Joachim Bonell,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3rd Edition,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5, p.194.

57) UNILEX 00.09.1996. ICC arbitral Award No.8486, Collection of ICC Arbitration awards Vol.IV at 321.

58) UNILEX 00.10.2000. ICC Arbitral Award No.10022.

59) UNILEX 28.11.2002. Arbitral Award by Camera Arbitrale Nazionale e Internazionale di Milano.

적용에 합의한 경우(PICC 전문 제2항의 경우)는 별개로 하더라도 많은 경우 법원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원용 또는 적용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재량 내지는 필요에 의해 PICC를 참조, 인용,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다. 특히 CISG체약국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CISG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라이선스계약,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운송, 회사양도, 대리점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그 재량에 의해 PICC를 원용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또한 CISG에 규정이 없는 사항, 예를 들면 손해배상금의 지불이자의 이자율에 대하여 PICC 제7.4.9.조 등을 원용하여 판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판정을 구하는 절차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무효취소 또는 승인거절이 분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 파리항소법원은 ICC중재판정(25.04.1996)이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거래관행과 PICC를 적용한 것은 중재부탁조건의 위반'이라고 제기된 외국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기각하였다. 기각이유로 'ICC중재규칙 제13조(5) 및 프랑스민사소송법 제1496조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법규범(rules of law)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거래관행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⁶⁰⁾

미국의 연방법원은 ICC중재판정(5.5.1997. ICC Award No.7365)의 승인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본 건 외국중재판정은 '당사자의 원용없이 PICC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정한 것은 중재부탁조건을 일탈하였다'고 하여 1958년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거절을 요하는 신청이 있었을 때, 협약 제5조(1)(c)의 승인거절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⁶¹⁾하고 있다.

PICC의 조항을 총괄하여 보면 참조한 사례중 PICC의 적용에 대하여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판정이 일부⁶²⁾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참조한 사례의 범위내에서는 대부분 PICC의 적용에는 긍정적이고 법원과 중재판정부 모두 국제계약의 실체상의 분쟁처리에 대하여 PICC를 판정의 규범 또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편적인 일반규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0) UNILEX 05.03.1998. Cour d'appel de Paris (1er Ch.C.)

61) UNILEX 07.12.1998. US District Court, S.D. Cal. No.98.1165-B.

62) 예를 들면, UNILEX 00.09..1998. ICC Arbitral Award No.9419.; UNILEX 12.11.2004. ICC Arbitral Award No.174.; 2003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of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등을 들 수 있다.

IV. PICC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PIC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PICC는 구속력있는 협약이 아니며, CISG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취급된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UNIDROIT집행위원회는 1994년 UNIDROIT원칙의 제정 당시부터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재검토를 상정하고 있었으며, 1997년에는 이미 확대판(제2판)의 발행을 염두에 두고 세계 각지의 주요법제와 지역을 대표하고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17명⁶³⁾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선정하여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동 작업반에는 1994년 제정당시의 전문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국제기구 및 중재기관의 전문위원들도 읊저버로 동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였다. 결과적으로 UNCITRAL의 대표자, ICC국제중재법원, 밀라노중재원, 스위스중재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4년 4월 집행위원회 제83차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어「PICC 2004」가 채택되었다.⁶⁴⁾ 이는 PICC 1994의 개정이라기보다는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업반은 대리인의 권한(authority of agents), 제3자의 권리(third party rights), 상계(set-off), 채권양도(assignment of rights), 채무 이전 및 계약양도(transfer of obligations and assignment of contracts), 채소기간 및 권리포기(limitation periods and waiver) 등을 우선적 논의과제로 선택하였다. PICC 2004는 UNIDROIT홈페이지⁶⁵⁾에 따르면, 1994년판에 비하여 전문(Preamble)이 확대되었으며 모순 행위금지(Inconsistent Behavior)(제1.8조)와 합의에 의한 채무면제(release by agreement)(제 5.1.9조)뿐만 아니라 5개의 추가적인 장(additional chapters)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PICC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계약체결(electronic contracting)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1장과 제 2장의 많은 유권해석(comment) 및 예시(illustrations)를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CC가 사용되는 것은 실체법으로서 이고, 법정지 또는 중재지의 절차 또는 정책(policy)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시효나 대리점보호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PICC의 적용을 합의 또는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국가법에 따른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판정⁶⁶⁾하고 있다.

63) 작업반에는 의장인 M.J. Bonell교수(이탈리아, 로마 I 대학 법과대학)를 비롯하여, 브라질, 캐나다, 가나, 이탈리아, 이집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러시아, 덴마크, 독일, 일본 등의 저명한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64) Michael Joachim Bonell, "UNIDROIT Principles 2004-The New Edi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FORM LAW REVIEW*, 2004, pp.5-40.(<http://www.unidroit.org>에서 출력).

65) <http://www.unidroit.org>

66) 예를 들면, 시효에 대해서는 UNILEX 22.12.2004. Arbitral Award by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UNIDROIT집행위원회는 PICC 2004를 승인할 때 PICC를 UNIDROIT사업에 관한 계속적 프로그램으로 추천하고, 사무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법조계 및 업계에 의한 활용을 점검하고, 향후 개정판에서 다룰 새로운 의제⁶⁷⁾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실무적으로 PICC의 수용을 점검함으로써, 특히 어떻게 계약당사자들에게 활용되고 법관 및 중재인들에게 인용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의제(additional topics)나 현행 원칙의 개선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집행위원회는 2005년 연차회기에서 향후 PICC 제3판의 준비를 위해 작업반을 가동시켰는데, 특히 무효계약의 해결, 불법성, 채무자 및 채권자의 복수성, 조건들, 소송을 위한 장기계약의 해제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2. 국내계약법과의 상충문제

PICC는 국제상사계약에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국내당사자간에도 합의가 있으면 PICC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당사자간의 계약자유 원칙에 입각하여 PICC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양당사자가 동일 내국인인 경우까지 PICC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문제이다. PICC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적 통일규범을 국내계약에 적용하는 경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PICC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적용내용이 국내 강행법과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유 원칙과 국내 강행법과의 우선적용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내국인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고려할 때, PICC의 적용보다는 국내법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계약자유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상거래활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적의 문제가 중요시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법 특히 계약법분야의 국제적 통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상인법(lex mercatoria) 및 준거법으로서의 문제점

국제계약에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의 준거법으로 국내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법의

Arbitration at the Ukrainian Chamber of Commerce and Trade 를 들 수 있으며, 대리점보호법에 대해서는 UNILEX 00.09.2002. Arbitral Award by Corte Arbitrale della Associazione Italiana Arbitrato No.91/1001을 들 수 있다.

6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nell, op.cit., pp.363-364.; 홍성규,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2004)의 적용과 전망”, 전계논문, pp.174-175.참조

일반원칙이나 상인법(*lex mercatoria*)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언의 적시가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문언의 유효성이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의 계약법을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망라하여 재기술(*restate*)한 PICC를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모든 국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PICC를 원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소극적 선택(negative choice)’은 계약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에 관련된 진정한 의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대등한 협상력 등의 사정에 의하여 국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PICC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CISG를 배제하는 준거법 지정이 갖는 효과는 CISG 제6조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PICC의 적용이 CISG의 모순규정에 우선하는 경우일 것이다. 양자가 모순되지 않는 규정 및 PICC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예를 들면,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매수인에게 인정된 특정이행 등)에 대해서는 CISG가 준거법으로 지정된다고 할 수 있다.⁶⁸⁾ 여기서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법에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PICC의 적용도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백의 보충을 외부에서 빌려올 것이 아니라 그 법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공백에 관련된 판례나 학계의 유력한 통설이 없는 경우 및 참조 가능한 외국법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흠결보충을 위한 여러 가지 학문적 대안의 하나로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비교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정한 PICC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⁶⁹⁾ 이상의 논의를 고려해 보면 PICC의 적용이 상인법(*lex mercatoria*)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대응방안

당사자들은 국제상사계약에 대한 준거법으로 PICC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명시적 지정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법의 일반원칙이나 상인법(*lex mercatoria*)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나 적용가능한 국내법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법관이나 중재인들에 의해 PICC가 선택될 여지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법의 일반원칙이나 상인법(*lex mercatoria*) 등의 문언을 사용하기보다는 또한 국내법의 적용배

68) 홍성규, 전제논문, p.167.

69) 최홍섭, 전제논문, p.101.

제를 법관이나 중재인 등 제3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국제상사계약에 대한 준거법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었을 때 PICC의 가치는 더욱 존중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PICC의 적용을 중재조항의 일부로 계약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분쟁이 소송으로 진전되는 경우 법원은 준거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법정지(*lex fori*)의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특정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고 PICC의 적용은 계약의 일부가 되어 준거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반면에 중재조항으로서 PICC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인들이 특정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법규범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PICC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과 대학에서의 법규범 및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내에서의 PICC에 대한 교육은 무역학과 법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전문연구자들이 많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PICC에 대한 학문적 후속세대의 양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도 이제는 CISG의 계약국으로서 국제상거래 활동의 선봉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구는 더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분쟁사례 분석에서도 보여지듯이 초창기에는 PICC가 유럽국가들의 전유물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도 그들의 분쟁해결에 많이 원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PICC의 향후 개정작업에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V. 결 론

현재까지는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특정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왔으나 21세기에는 진정한 국제매매법이나 상인법(*lex mercatoria*)을 적용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PICC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상거래에 유용한 상인법(*lex mercatoria*)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분쟁의 예방 내지는 해결의 기준척도가 되고 있다. 그동안 CISG가 경성법적인 특성과 적지 않은 법적 흠결로 인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이를 해석·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PICC는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분야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PICC는 CISG와 같은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에 실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적용가능하며, 일종의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상사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지만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법을 해석 또는 보충하는 경우에 유용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PICC는 CISG와 같이 이미 국제

상거래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협약이나 법률 등을 해석·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각국의 상사법을 통일시켜 나감으로써 범세계적인 상거래법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CISG의 가입을 주저해 왔거나 CISG의 기능에 다소 회의론을 가졌던 국가들에 제조차도 CISG의 법적기능과 효율성을 재인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미 앞에서 그동안 UNILEX에 축적된 사례를 분석해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국제계약에서의 PICC 적용 및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에서의 원용가능성은 상당히 크며 실제 적용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PICC가 국제거래에 정통한 비교법학자들에 의해 대륙법계 및 보통법계(common law system)의 최대공약수적인 조문들로 구성되었음은 향후 범세계적인 상거래 활동에서 핵심적 법률로써 기능할 것이며 각국의 계약법을 통일시켜 나가는 모범법(model law)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계약당사자들은 PICC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자신들의 국제상사계약에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조항으로 PICC를 지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PICC는 이미 의도했던 제정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PICC의 개정판에서도 수용되지 못했던 새로운 의제들(additional topics)의 비교법적인 분석·수용 문제, 국제상거래 당사자조차 생소하게 인식되고 있는 PICC에 대한 대외홍보 및 국제계약에의 적용, 각국 국내법에서의 모범법(model law)으로서의 수용문제 등은 장차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안건형,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오원석, “국제상사계약에서 UNIDROIT원칙의 실무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4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9.
- _____, 최준선·허해관 공역,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 최홍섭,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의 적용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8집, 국제거래법학회, 1999.
- 홍성규, “*Lex Mercatoria*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의 역할”, 「무역학회지」, 제2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4.
- _____, “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의 적용가능성”, 「국제무역연구」, 제10권 제2호, 국제무역학회, 2004.
- _____,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2004)의 적용과 전망”, 「중재연구」, 제16권 제

2호, 한국중재학회, 2006.

新堀 聰, “グローバル商取引法 各論, その二: ユニドロワ國際商事契約原則(1)”, 『JCAジャーナル』, 第50卷 2號, 日本商事仲裁協會, 2003.2.

Berger, Klaus Peter, *The Creeping Codification of the Lex Mercatoria*,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Bonell, Michael Joachim, *The UNIDROIT Principles in Practice: Caselaw and Bibliography on the Principles of Commercial Contracts*,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2.

_____,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3rd Edition,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5.

_____,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_____, “UNIDROIT Principles 2004-The New Edi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FORM LAW REVIEW*, 2004.

_____,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Sales Law” in Ian Fletcher et al., *Foundation and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London: Sweet & Maxwell, 2001.

_____,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3rd Edition,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5.

_____, “The UNIDROIT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Why? What?,” *69 Tulane Law Review*, 1995.

MAYER, P., “The Rol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CC Arbitration Practice”, in ICC/UNIDROIT (eds),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Reflections on their Us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pecial Supplement-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2002.

Ramberg, J.,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CC(Publication No.588),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Rimke, Joern, “Force majeure and hardship: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with specific regard to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http://www.cisg.law.pace.edu/cisg/biblio/rimke.html>

Vogenauer Stefan and Kleinheisterkamp, *Commentary on the Inidroit Principle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ABSTRACT

The Analyzing on Application Cases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ung-Kyu, Hong

PICC executes its role as a useful *lex mercatoria* in the continuously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to be adopted as the standard criterion of prevention or dispute resolution.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CISG has not presented results beyond expectation in the past due to hard laws and legal deficiency, PICC, which possesses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function, is considered undoubtedly useful particularl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observed in the previously mentioned analysis on cases accumulated in UNILEX, PICC application and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ntract between parties possess considerably large claim possibility and the number of actual application cas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fact that PICC has been composed as maximum common measures of continental and common law systems by traditional comparative legal scholars familiar with international trade can function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future global trade activity and can also act as the model law for uniting contract laws of nations. In this aspect, PICC can be evaluated to have considerably achieved enactment purpose of previous intention.

However, additional topics that had not been accepted in the revised edition of PICC remain as assignments requiring solution, such as analysis and acceptance problem of comparative law, PR of PICC unfamiliar even to the relative parti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contract, and absorption problem as model law in various domestic laws.

Key Words : PICC, *lex mercatoria*, CISG,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ternational contract.